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소명서

광고계정번호	
상호 또는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비즈채널 URL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 조 및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관한고시』에 따라, 1)직전년도 기준,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2)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 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됩니다.

* 다음 중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또는 업체가) 최근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를 하여 거래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	회
----------------------------	---

본인이(또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본인이(또는 본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소명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 합니다.

- 서면 제출 후 판매횟수/판매금액 변화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귀사에 통지하고 모든 광고 게재를 중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귀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 후 광고를 재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_____동의
- 사이트 내 광고비 등 지출 내역, 제 3 자 신고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귀사에서 본인에게(또는 본 업체에) 추가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매출 입증 자료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본인은(또는 본 업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 (광고 게재 중지 등)에 대해 귀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_____동의
-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보증하며, 서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면의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귀사를 면책하고 귀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_____동의

202_____._____._____.

성명 또는 대표자명 : _____(날인 또는 서명)

주식회사 카카오 귀중